

접 수	의안과 - (20 . . . . : 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# 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유치원 급식에 관한 세부규정 법률명시를 통해, 어린이들의  
급식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  
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건의서 3부  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 년 월 일

## 청 원 인

성 명 : 대표발의자 : 이 주 왕  
공동발의자 : 김 다 혜, 김 태 욱, 정 혜 윤,  
정 현 아, 김 대 현

주 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관악부영A 202-903

전화번호 : 070-8701-2223 (휴대전화 : 010-8286-6915)

소 개 의 원 : (인) 외 인 .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## 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관악부영A 202-903
	성명 : 이주왕
건명	유치원 급식에 관한 세부규정 법률명시를 통해, 어린이들의 급식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
소개년월일	2009년 월 일

소개의원

인

# 청원서

## 유치원 급식에 관한 세부규정 법률명시를 통해, 어린이들의 급식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

### 1. 제안이유

최근 유치원들의 비위생적인 급식 관리로 인해, 집단 식중독 발병, 부패한 식자재 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. 실례로 유명유치원의 급식과 관련하여, 언론에 제보되어 보도된 내용을 보면, 급식으로 나온 달걀 6개중 3개 이상이 부패한 상태로 아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,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좋은 품질의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청소년 의회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### 2. 주요골자

학교급식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학교급식 대상)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
3. 「유아교육법」 제 2조 2항에서 정의되어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아동을 교육하는 "유치원"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

### 제17조(건강검진 및 급식)

-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급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<학교급식법>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

신구문대조표

현행	개정문
제4조(학교급식 대상)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	제4조(학교급식 대상)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

<p>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 &lt;신설&gt;</p> <p>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</p>	<p>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·고등학교</p> <p>3. 「유아교육법」 제 2조 2항에서 정의되어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아동을 교육하는 "유치원"</p> <p>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</p>
---	---

현행	개정문
<p>제17조(건강검진 및 급식)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. &lt;개정&gt;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·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 &lt;개정&gt;</p>	<p>제17조(건강검진 및 급식) ①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급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&lt;학교급식법&gt;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</p>

청원인 성명 : 이 주 왕

청원인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관악부영A 202-903

청원인 전화번호 : 010-4161-6031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
【별첨 2】

## 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---

---

연 번	의 원 명	날 인	소 속 정 당	소속위원회	선 거 구	비 고

#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는 사본)이며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 2. 청원제출용지

- ① 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- ② 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**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**  
.....  
**대표이사 홍길동 (인) 외 24인(법인)**

-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-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## 3. 청원소개의견서

-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- ② 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-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## 4. 청원서

-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-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